

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995. 10. 10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5년 9월 30일

⊙ 회부일자 : 1995년 9월 30일

3. 제 안 이 유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(1995. 7. 1대통령령 제14,703호)의 개정으로,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액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 요 골 자

○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 의정자료 수집, 연구비 월 500,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,000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.

○ 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하고 교육위원의 회기중 회의(소위원회 회의 포함)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1일 60,000원을 지급토록 함

-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토록 함.

5. 검토 보고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바,

본 조례안은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('95. 7. 1, 대통령령 제14,703호)의 개정으로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

- "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"로 조례제명을 개정하고

○ 그 내용에 있어

-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 월 500,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,000원을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며
- ("일비"를 "회의수당"으로 하여 교육위원이 회기중 회의(소위원회 회의 포함)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1일에 60,000원을 지급토록 하며
-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토록 하는 등

상위법령의 개정애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개정 조례안 : 별 첨